

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9016(2023. 7. 25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170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7. 10. ~ 2023. 7. 3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부서 사전협의

가) 기획예산담당관-4328(2023. 3. 22.)

나) 기획예산담당관-5921(2023. 4. 19.)

다) 열린민원과-21248(2023. 5. 25.)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 등 28건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, 직제 개편 및 기관 고유 명칭 변경사항 미적용, 차별적 내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